

의안번호	2217986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6.4.20.
추계번호	26B1940
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한 조치를 하고, 조치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」을 통해 도서지역¹⁾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및 수도시설 설치·개량비용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현황

(단위: 억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주요내용	2024 (개소)	2025 (개소)	2026 (개소)
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	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	해저를 이용한 상수도관로 설치, ②연륙교를 이용한 도서내 관로 설치, ③관정개발, ④해수담수화시설, ⑤저수지 개발, ⑥배수지, ⑦운반급수선 등 도서지역의 수도공급을 위한的全过程에 필요한 수도시설 설치 지원	611 (30)	669 (26)	697 (27)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참고로,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('18, 국정과제) 이행을 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에 따라, 동 세부사업에서 2020, 2023년 2단계에 걸쳐 8개 내역사업이 이관됨(참고자료 참조)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가뭄, 수원고갈,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 물 공급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발생할 비상 먹는물 공급조치의 수요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해당 조치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시점에서는 수요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1) 「도서개발촉진법」에 따른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과 교량으로 연결된 지 10년 이내인 섬(제주도 본섬 제외)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방이양 내역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이양시기	내역사업명	사업내용
1단계 (2020)	농어촌 생활용수 개발	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개선
	소규모 수도시설개량	마을상수도, 소규모급수시설 등 지방상수도 이외 시설을 개량하여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안전한 물공급
	식수전용 저수지확충	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취수원 개발 및 가뭄시에도 상시 공급 가능한 취수 유지 사업
	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(제주)	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규제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직·간접적으로 보상
2단계 (2023)	강변여과수 개발	기존 취수원의 수량 및 수질문제 등으로 하천표류수 외의 대안으로 하천 바닥의 모래층 아래 자연여과된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
	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	하천 수질 악화로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추가 정수함으로써 국내정수처리수준 향상 및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
	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	급수구역간 무단수 연계관로체계를 구축하여 재난, 가뭄에 대응
	친환경대체 취수원개발(제주)	한정적인 제주도 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직접 유출량 중 연안에서 유출되는 용천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대체 취수원으로 확보